|  |  |  |
| --- | --- | --- |
| **1.4.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  세관총서 령 제219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 감독관리방법>이 2014년 2월 13일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심이 통과되어 아래아 같이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26일 세관총서 령 제113호로 반포함과 아울러 세관총서 령 제168호, 제195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뭄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서장  2014년 3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공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세관의 가공무역화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가공무역화물의 수책 건립, 수출입통관, 가공, 감독관리, 말소수속을 처리하는데 적용한다.  가공무역 경영기업, 가공기업, 청부업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가공무역이란 경영기업이 전부 또는 일부 원부자재, 부품, 소자,포장재료(이하 자재라 함)를 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 후 완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가공과 수입가공을 포함한다.  **제4조**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가공무역수입자재가 국가의 수입규제 자재에 속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세관에 수입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가공무역수출완제품이 국가수출규제제품에 속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세관에 수출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가공무역 수입자재에 대해 보세화물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가공완제품을 수출한 후 세관은 사정한 실제가공 재수출수량에 근거하여 말소 처리를 한다.  규정에 따라 가공무역 수입자재를 수입할 때 먼저 세금을 징수한 경우, 가공완제품을 수출 후 세관은 사정한 실제가공 재수출수량에 의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한다.  가공무역 수출제품이 수출관세 과세품목에 속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관세를 부과한다.  **제6조** 세관은 국가 규정에 의거하여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담보제도를 실시한다.  세관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가공무역화물을 저당할 수 없다.  **제7조** 세관은 가공무역에 대한 분류별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8조**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검증 검사할 수 있으며 기업은 그에 협조해야 한다.  세관의 검증 검사는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가공무역화물의 수책 건립, 수출입통관, 말소는 페이퍼 증빙서류, 전자데이터 형식을 취해야 한다.  **제10조** 가공무역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과 세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세관 감독관리요구에 부합되는 장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증빙을 설치하고 본 기업의 가공무역과 관련되는 수입, 보관, 양도, 이전, 매출, 가공, 사용, 소모와 수출 등 상황을 기록하며 합법적이고 효과있는 증빙에 의거하여 기장하고 채산해야 한다.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화물과 비가공무역화물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가공무역화물은 세관의 등록을 거친 장소에 보관시켜야 하며, 전문 보관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이 가공무역화물 보관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가공무역 화물등록**  **제11조** 경영기업은 가공기업 소재지 주관세관에서 가공무역화물 수책건립 수속을밟아야 한다.  경영기업이 가공기업과 동일 직속세관의 관할 지역범위에 소재하지 아니한 경우, 타지역 가공무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수책 건립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경영기업이 가공무역 수책 건립 수속을 할 때 세관에 무역방식, 단위소모량, 수출입항만, 수입자재와 수출완제품의 상품명칭, 상품번호, 규격사이즈, 가격과 원산지 등 상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아래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1) 가공무역업무 전재를 동의하는 주관부문의 유효한 승인문서  (2) 경영기업 자신이 가공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문에서 발행한 《가공무역 가공기업 생산능력증명》을 제출  (3) 경영기업이 위탁가공을 하는 경우, 경영기업과 가공기업간에 체결한 위탁가공계약, 주관부문에서 발행한 가공기업의 《가공무역가공기업생산능력증명》을 제출  (4) 경영기업이 체결한 계약  (5) 세관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증명문서와 서류.  **제13조** 경영기업이 본 방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완벽하고 유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책 건립을 신청한 경우, 세관은 기업 수책건립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가공무역 수책 건립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담보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경영기업이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은 가공무역수책 건립수속을 처리한다.  **제14조** 아래의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기업이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공한 후에야 세관은 수책 건립 수속을 처리한다.  (1) 밀수 혐의로 세관에 의해 입건 조사중이며 사건 심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2) 관리가 혼란하여 세관의 시정 명령을 받고 아직 시정 기간내인 경우.  **제1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경영기업이 수책 건립 수속을 할 때 의무납세액에 상응하는 보증금 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공장 건물 또는 설비를 임대하는 경우 2. 처음으로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3. 가공무역수책을 ２차(2차 포함) 이상 연기하는 경우   (4) 타지역 가공무역 수속을 하는 경우  (5) 규정위반 혐의로 세관에 의해 입건 조사중이며 사건 심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제1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수책 건립 수속을 처리하지 못한다.   1. 수입자재 또는 수출완제품이 국가수출입 금지품목에 속하는 경우 2. 가공제품이 국가의 국내 가공생산 금지품목에 속하는 경우 3. 수입자재에 대해 보세 감독관리를 실사하기 어려운 경우 4. 국가가 가공무역을 허용하지 않는 경영기업 또는 가공기업에 속하는 경우   (5) 경영기업이 규정한 기한 내에 세관에 이미 만기 도래한 가공무역수책에 대해 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수책 건립을 또 신청한 경우.  **제17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 수책 건립 수속을 처리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와 사실이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화물을 아직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그 수책을 말소한다. 2. 화물을 이미 수입한 경우 기업에 화물을 반출하도록 명령한다.   본 조 제1항 제(2)호 상황에서 경영기업은 세관에 신청하여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 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  **제18조** 이미 가공무역화물 수책 건립수속을 완료한 경영기업은 세관에서 가공무역수책 분책, 속계책을 수령할 수 있다.  **제19조** 가공무역화물 수책 내용이 변경된 경우,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수책 유효기간내에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종전 심사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종전 심사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가공무역화물 수출입, 가공**  **제20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을 수입할 때, 경외 또는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 감독관리 장소로부터 수입할 수 있으며 또한 심가공이월 방식을 통하여 이월할 수도 있다.  경영기업이 가공무역화물을 수출할 때, 경외 또는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보세 감독장소로 수출할 수 있거나, 또는 심가공이월 방식을 통하여 이월할 수도 있다.  **제21조** 경영기업은 가공무역수책 및 가공무역 수출화물 전용통관신고서 등 관련증빙을 지참하고 가공무역화물 수출입통관수속을 취급해야 한다.  **제22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한 화물은 세관의 통계에 넣는다.  **제23조** 가공무역기업이 심가공 이월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전입기업, 전출기업은 각자의 주관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 송수하 및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 관리규정은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공표한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심가공이월 수속을 할 수 없다.  (1)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기한부 시정 명령을 받았으며, 아직 시정 기한 내에 있는 경우  (2)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책 말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경우  (3) 밀수 혐의로 세관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안건이 아직 종결되지 못한 경우.  가공무역기업이 세관의 규정에 따라 화물을 받거나 송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가공이월 수속을 더는 할 수 없다.  **제24조** 경영기업이 외주가공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외주가공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 외주가공이 발생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세관에서 등록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외주가공 업무를 전개할 때, 가공무역화물을 청부업자에 전매할 수 없으며, 청부업자는 가공무역화물을 또다시 외주할 수 없다.  경영기업이 모든 프로세스를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수속을 처리하고 세관에 외주가공화물의 의무납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의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경영기업은 소재지 주관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밟은 후 외주 가공한 완제품, 나머지자재,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파치품, 부산품 등 가공무역화물을 본 기업으로 운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세관이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기업과 청부업자는 이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27조** 가공무역화물의 원부자재는 전문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세관의 승인을 거쳐 경영기업은 보세자재 간, 보세자재와 비보세자재간에 서로 교환수 있다. 단 교환하는 자재는 동일 기업에 한하며 아울러 동일 품목, 동일 규격, 동일 수량,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임가공 보세수입자재는 서로 교환할 수 없다.  **제28조** 가공공학의 수요로 인해 반드시 비보세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사전에 세관에 비보세자재를 사용하는 비율, 품목, 규격, 사이즈, 수량 등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신고한 경우, 세관은 말소 처리를 할 때 수출완제품 총소모량에서 심사 공제해야 한다.  **제29조** 경영기업이 수입자재의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규격사이즈가 계약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원래 공급업자에게 반송하여 교환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가공무역 수출제품 A/S로 인해 미가공 보세자재를 수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출입항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이미 가공한 보세 수입자재는 교환할 수 없다.  **제4장 가공무역화물 말소**  **제30조** 경영기업은 규정한 기한 내에 수입자재를 가공하여 재수출해야 하며 가공무역수책 명목의 마지막 완제품이 수출 또는 가공무역수책 만기도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말소 신고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체결한 계약을 사전에 종료하는 경우, 계약 종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  **제31조** 경영기업이 말소 신고를 할 때, 세관에 수입자재，수출완제품,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나머지 자재, 파치품, 부산품 그리고 단위소모량 등 상황을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기업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말소 신고를 제출하여 증빙서류가 완비하고 유효한 경우 세관은 그 말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제32조** 세관 말소는 페이퍼증빙말소와 전자데이터말소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에 가서 검증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세관은 말소 신고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직속세관장 또는 권한을 부여한 예속 세관장의 승인을 거쳐 30일 연기할 수 있다.  **제33조** 가공무역보세 수입자재 또는 완제품을 사유로 내수판매를 하는 경우, 세관은 주관부문의 내수판매 인가 유효 비준문서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보세수입자재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한편 세금 연기납부 이자를 추징하며,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입자재가 국가의 수입 규제규정에 속하는 경우, 경영기업은 세관에 수입허가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경영기업이 사유로 가공무역수입자재를 반송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 반송증빙에 근거해 말소한다.  **제35조** 경영기업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나머지 자재, 파치품, 부산품과 재해 입은 보세화물은 세관의 가공무역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나머지 자재, 파치품, 부산품과 재해입은 보세화물의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세관은 관련증빙에 의거하여 말소한다.  **제36조** 경영기업이 가공무역수책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세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후 분실된 가공무역수책을 말소 처리한다.  **제37조** 가공무역수책을 말소 처리한 후 세관은 경영기업에 《말소종결통지서》를 발급한다.  **제38조** 경영기업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세관은 말소 처리 후 규정에 따라 담보를 해제한다.  **제39조** 가공무역화물의 수책 건립과 말소 증빙서류는 가공무역수책 말소 처리를 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제40조** 가공무역기업이 분립, 합병, 파산, 해산 또는 기타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에 보고하고 세관수속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가공무역화물이 인민법원 또는 관련 행정기관에 의해 봉인 보관된 경우, 가공무역기업은 가공무역화물이 봉인 보관된 당일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세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41조** 본 방법을 위반하고 밀수 구성, 세관감독관리 행위 위반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2조** 본 방법 중 용어의 함의는 아래아 같다.  임가공이란 수입자재는 경외기업에서 제공하고 경영기업은 환결제를 통한 수입이 필요 없고 단지 경외기업의 요구에 따라 가공 또는 조립하여 가공비만 수취하고 완제품은 경외기업이 매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수입가공이란 수입자재는 경영기업이 외환을 지급하여 수입하고 완제품은 경영기업이 해외로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가공무역화물이란 가공무역 명목의 수입자재, 가공완제품 및 가공과정중에서 발생한 조각․끄트러기․토막․자투리, 파치품, 부산품 등을 말한다.  가공무역기업이란 세관에 등기 등록한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을 말한다.  경영기업이란 대외로 가공무역 수출입계약을 체결하는 각종 수출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그리고 승인을 거쳐 임가공 경영허가를 취득한 대외가공조립서비스회사를 말한다.  가공기업이란 경영기업의 위탁을 받고 수입자재 가공 또는 조립을 책임짐과 아울러 법인자격을 갖고 있는 생산기업, 그리고 경영기업이 설립한 법인자격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독립 채산하는 한편 이미 공상영업허가서를 취득한 공장을 말한다.  단위자재소모량이란 가공무역기업이 정상적인 생산조건하에서 단위 수출완제품을 가공생산함에 있어서 소모한 수입자재의 수량을 의미하며 단모량으로 약칭한다.  심가공이월이란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자재로 가공한 제품을 다른 가공무역기업에 이전하여 한층 더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청부업자란 경영기업과 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기업이 위탁한 외주가공업무를 도급 맡는 생산기업이나 개인을 의미한다.  외주가공이란 가공무역기업이 청부업자에게 위탁하여 가공무역화물에 대해 가공을 진행하고 규정한 기한 내에 가공후의 제품을 최종적으로 재수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말소란 가공무역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공재수출 또는 내수판매 등 세관수속을 처리한 후 규정한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말소 신고를 하며, 세관은 검증 검사를 실시한 후 감독관리 해제수속을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43조** 보세공장에서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가공무역보세공장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4조** 수입가공 보세그룹에서 전개하는 가공무역업무는 세관의 수입가공 보세그룹에 대한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온라인 감독관리를 적용하는 가공무역기업이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가공무역기업에 대한 세관의 컴퓨터온라인감독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 가공무역기업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에서 가공무역업무를 전개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단모량 신고와 심사결정은 세관의 가공무역단위소모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8조** 세관의 가공무역화물 수입시의 세금 선 징수, 수출 후 환급 관리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49조** 본 방법에 대한 해석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진다.  **제50조** 본 방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2월 26일 세관총서 제113호 반포하고 아울러 세관총서 령 제168호, 제195호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  |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货物**  **监管办法**  海关总署令第219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已于2014年2月13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2004年2月26日以海关总署令第113号发布，并以海关总署令第168号、195号修改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同时废止。  署 长  2014年3月12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促进加工贸易健康发展，规范海关对加工贸易货物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以及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办理加工贸易货物手册设立、进出口报关、加工、监管、核销手续。  　　加工贸易经营企业、加工企业、承揽者应当按照本办法规定接受海关监管。  **第三条** 本办法所称“加工贸易”是指经营企业进口全部或者部分原辅材料、零部件、元器件、包装物料（以下统称料件），经过加工或者装配后，将制成品复出口的经营活动，包括来料加工和进料加工。  **第四条** 除国家另有规定外，加工贸易进口料件属于国家对进口有限制性规定的，经营企业免于向海关提交进口许可证件。  　　加工贸易出口制成品属于国家对出口有限制性规定的，经营企业应当向海关提交出口许可证件。  **第五条** 加工贸易项下进口料件实行保税监管的，加工成品出口后，海关根据核定的实际加工复出口的数量予以核销。  　　加工贸易项下进口料件按照规定在进口时先行征收税款的，加工成品出口后，海关根据核定的实际加工复出口的数量退还已征收的税款。  　　加工贸易项下的出口产品属于应当征收出口关税的，海关按照有关规定征收出口关税。  **第六条** 海关按照国家规定对加工贸易货物实行担保制度。  　　未经海关批准，加工贸易货物不得抵押。  **第七条** 海关对加工贸易实行分类监管，具体管理办法由海关总署另行制定。  **第八条** 海关可以对加工贸易企业进行核查，企业应当予以配合。  　　海关核查不得影响企业的正常经营活动。  **第九条** 加工贸易货物的手册设立、进出口报关、核销，应当采用纸质单证、电子数据的形式。  **第十条** 加工贸易企业应当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以及海关有关规定，设置符合海关监管要求的账簿、报表以及其他有关单证，记录与本企业加工贸易货物有关的进口、存储、转让、转移、销售、加工、使用、损耗和出口等情况，凭合法、有效凭证记账并且进行核算。  　　加工贸易企业应当将加工贸易货物与非加工贸易货物分开管理。加工贸易货物应当存放在经海关备案的场所，实行专料专放。企业变更加工贸易货物存放场所的，应当经海关批准。  **第二章　加工贸易货物手册设立**  **第十一条** 经营企业应当向加工企业所在地主管海关办理加工贸易货物的手册设立手续。  　　经营企业与加工企业不在同一直属海关管辖的区域范围的，应当按照海关对异地加工贸易的管理规定办理手册设立手续。  **第十二条** 除另有规定外，经营企业办理加工贸易货物的手册设立，应当向海关如实申报贸易方式、单耗、进出口口岸，以及进口料件和出口成品的商品名称、商品编号、规格型号、价格和原产地等情况，并且提交下列单证：  　　（一）主管部门签发的同意开展加工贸易业务的有效批准文件；  　　（二）经营企业自身有加工能力的，应当提交主管部门签发的《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  　　（三）经营企业委托加工的，应当提交经营企业与加工企业签订的委托加工合同、主管部门签发的加工企业《加工贸易加工企业生产能力证明》；  　　（四）经营企业对外签订的合同；  　　（五）海关认为需要提交的其他证明文件和材料。  **第十三条** 经营企业按照本办法第十一条、第十二条规定，提交齐全、有效的单证材料，申报设立手册的，海关应当自接受企业手册设立申报之日起5个工作日内完成加工贸易手册设立手续。  　　需要办理担保手续的，经营企业按照规定提供担保后，海关办理手册设立手续。  **第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在经营企业提供相当于应缴税款金额的保证金或者银行、非银行金融机构保函后办理手册设立手续：  　　（一）涉嫌走私，已经被海关立案侦查，案件尚未审结的；  　　（二）由于管理混乱被海关要求整改，在整改期内的。  **第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可以要求经营企业在办理手册设立手续时提供相当于应缴税款金额的保证金或者银行、非银行金融机构保函：  　　（一）租赁厂房或者设备的；  　　（二）首次开展加工贸易业务的；  　　（三）加工贸易手册延期两次（含两次）以上的；  　　（四）办理异地加工贸易手续的；  　　（五）涉嫌违规，已经被海关立案调查，案件尚未审结的。  **第十六条** 加工贸易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办理手册设立手续：  　　（一）进口料件或者出口成品属于国家禁止进出口的；  　　（二）加工产品属于国家禁止在我国境内加工生产的；  　　（三）进口料件不宜实行保税监管的；  　　（四）经营企业或者加工企业属于国家规定不允许开展加工贸易的；  　　（五）经营企业未在规定期限内向海关报核已到期的加工贸易手册，又重新申报设立手册的。  **第十七条** 经营企业办理加工贸易货物的手册设立，申报内容、提交单证与事实不符的，海关应当按照下列规定处理：  　　（一）货物尚未进口的，海关注销其手册；  　　（二）货物已进口的，责令企业将货物退运出境。  　　本条第一款第（二）项规定情形下，经营企业可以向海关申请提供相当于应缴税款金额的保证金或者银行、非银行金融机构保函，并且继续履行合同。  **第十八条** 已经办理加工贸易货物的手册设立手续的经营企业可以向海关领取加工贸易手册分册、续册。  **第十九条** 加工贸易货物手册设立内容发生变更的，经营企业应当在加工贸易手册有效期内办理变更手续。  需要报原审批机关批准的，还应当报原审批机关批准，另有规定的除外。  **第三章 加工贸易货物进出口、加工**  **第二十条** 经营企业进口加工贸易货物，可以从境外或者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进口，也可以通过深加工结转方式转入。  　　经营企业出口加工贸易货物，可以向境外或者海关特殊监管区域、保税监管场所出口，也可以通过深加工结转方式转出。  **第二十一条** 经营企业应当凭加工贸易手册、加工贸易进出口货物专用报关单等有关单证办理加工贸易货物进出口报关手续。  **第二十二条** 经营企业以加工贸易方式进出口的货物，列入海关统计。  **第二十三条** 加工贸易企业开展深加工结转的，转入企业、转出企业应当向各自的主管海关申报，办理实际收发货以及报关手续。具体管理规定由海关总署另行制定并公布。  　　有下列情形之一的，加工贸易企业不得办理深加工结转手续：  　　（一）不符合海关监管要求，被海关责令限期整改，在整改期内的；  　　（二）有逾期未报核手册的；  　　（三）由于涉嫌走私已经被海关立案调查，尚未结案的。  　　加工贸易企业未按照海关规定进行收发货的，不得再次办理深加工结转手续。  **第二十四条** 经营企业开展外发加工业务，应当按照外发加工的相关管理规定自外发之日起3个工作日内向海关办理备案手续。  　　经营企业开展外发加工业务，不得将加工贸易货物转卖给承揽者；承揽者不得将加工贸易货物再次外发。  　　经营企业将全部工序外发加工的，应当在办理备案手续的同时向海关提供相当于外发加工货物应缴税款金额的保证金或者银行、非银行金融机构保函。  **第二十五条** 外发加工的成品、剩余料件以及生产过程中产生的边角料、残次品、副产品等加工贸易货物，经营企业向所在地主管海关办理相关手续后，可以不运回本企业。  **第二十六条** 海关对加工贸易货物实施监管的，经营企业和承揽者应当予以配合。  **第二十七条** 加工贸易货物应当专料专用。  　　经海关核准，经营企业可以在保税料件之间、保税料件与非保税料件之间进行串换，但是被串换的料件应当属于同一企业，并且应当遵循同品种、同规格、同数量、不牟利的原则。  　　来料加工保税进口料件不得串换。  **第二十八条** 由于加工工艺需要使用非保税料件的，经营企业应当事先向海关如实申报使用非保税料件的比例、品种、规格、型号、数量。  经营企业按照本条第一款规定向海关申报的，海关核销时应当在出口成品总耗用量中予以核扣。  **第二十九条** 经营企业进口料件由于质量存在瑕疵、规格型号与合同不符等原因，需要返还原供货商进行退换，以及由于加工贸易出口产品售后服务需要而出口未加工保税料件的，可以直接向口岸海关办理报关手续。  　　已经加工的保税进口料件不得进行退换。  **第四章 加工贸易货物核销**  **第三十条** 经营企业应当在规定的期限内将进口料件加工复出口，并且自加工贸易手册项下最后一批成品出口或者加工贸易手册到期之日起30日内向海关报核。  　　经营企业对外签订的合同提前终止的，应当自合同终止之日起30日内向海关报核。  **第三十一条** 经营企业报核时应当向海关如实申报进口料件、出口成品、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以及单耗等情况，并且按照规定提交相关单证。  　　经营企业按照本条第一款规定向海关报核，单证齐全、有效的，海关应当受理报核。  **第三十二条** 海关核销可以采取纸质单证核销、电子数据核销的方式，必要时可以下厂核查，企业应当予以配合。  海关应当自受理报核之日起30日内予以核销。特殊情况需要延长的，经直属海关关长或者其授权的隶属海关关长批准可以延长30日。  **第三十三条** 加工贸易保税进口料件或者成品因故转为内销的，海关凭主管部门准予内销的有效批准文件，对保税进口料件依法征收税款并且加征缓税利息，另有规定的除外。  　　进口料件属于国家对进口有限制性规定的，经营企业还应当向海关提交进口许可证件。  **第三十四条** 经营企业因故将加工贸易进口料件退运出境的，海关凭有关退运单证核销。  **第三十五条** 经营企业在生产过程中产生的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按照海关对加工贸易边角料、剩余料件、残次品、副产品和受灾保税货物的管理规定办理，海关凭有关单证核销。  **第三十六条** 经营企业遗失加工贸易手册的，应当及时向海关报告。  　　海关按照有关规定处理后对遗失的加工贸易手册予以核销。  **第三十七条** 对经核销结案的加工贸易手册，海关向经营企业签发《核销结案通知书》。  **第三十八条** 经营企业已经办理担保的，海关在核销结案后按照规定解除担保。  **第三十九条** 加工贸易货物的手册设立和核销单证自加工贸易手册核销结案之日起留存3年。  **第四十条** 加工贸易企业出现分立、合并、破产、解散或者其他停止正常生产经营活动情形的，应当及时向海关报告，并且办结海关手续。  　　加工贸易货物被人民法院或者有关行政执法部门封存的，加工贸易企业应当自加工贸易货物被封存之日起5个工作日内向海关报告。  **第五章 附 则**  **第四十一条** 违反本办法，构成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或者其他违反《海关法》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二条** 本办法中下列用语的含义：  　　来料加工，是指进口料件由境外企业提供，经营企业不需要付汇进口，按照境外企业的要求进行加工或者装配，只收取加工费，制成品由境外企业销售的经营活动。  　　进料加工，是指进口料件由经营企业付汇进口，制成品由经营企业外销出口的经营活动。  　　加工贸易货物，是指加工贸易项下的进口料件、加工成品以及加工过程中产生的边角料、残次品、副产品等。  　　加工贸易企业，包括经海关注册登记的经营企业和加工企业。  　　经营企业，是指负责对外签订加工贸易进出口合同的各类进出口企业和外商投资企业，以及经批准获得来料加工经营许可的对外加工装配服务公司。  　　加工企业，是指接受经营企业委托，负责对进口料件进行加工或者装配，并且具有法人资格的生产企业，以及由经营企业设立的虽不具有法人资格，但是实行相对独立核算并已经办理工商营业证（执照）的工厂。  　　单位耗料量，是指加工贸易企业在正常生产条件下加工生产单位出口成品所耗用的进口料件的数量，简称单耗。  　　深加工结转，是指加工贸易企业将保税进口料件加工的产品转至另一加工贸易企业进一步加工后复出口的经营活动。  　　承揽者，是指与经营企业签订加工合同，承接经营企业委托的外发加工业务的企业或者个人。  　　外发加工，是指经营企业委托承揽者对加工贸易货物进行加工，在规定期限内将加工后的产品最终复出口的行为。  　　核销，是指加工贸易经营企业加工复出口或者办理内销等海关手续后，凭规定单证向海关报核，海关按照规定进行核查以后办理解除监管手续的行为。  **第四十三条** 保税工厂开展加工贸易业务，按照海关对加工贸易保税工厂的管理规定办理。  **第四十四条** 进料加工保税集团开展加工贸易业务，按照海关对进料加工保税集团的管理规定办理。  **第四十五条** 实施联网监管的加工贸易企业开展加工贸易业务，按照海关对加工贸易企业实施计算机联网监管的管理规定办理。  **第四十六条** 加工贸易企业在海关特殊监管区域内开展加工贸易业务，按照海关对海关特殊监管区域的相关管理规定办理。  **第四十七条** 单耗的申报与核定，按照海关对加工贸易单耗的管理规定办理。  **第四十八条** 海关对加工贸易货物进口时先征收税款出口后予以退税的管理规定另行制定。  **第四十九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五十条**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2004年2月26日以海关总署令第113号发布，并经海关总署令第168号、195号修正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加工贸易货物监管办法》同时废止。 |